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공서비스 성격을 띤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이 처우가 더 좋은 시내버스나 택배 등 타 업종으로 계속하여 이탈함에 따라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하고,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등 주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바,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 신설)
- 2)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규정 신설(안 제7조 신설)
- 3) 처우개선비 등 환수 규정 신설(안 제8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가)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 신설)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사람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규정함

나)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규정 신설(안 제7조 신설)

-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, 근무환경 개선, 교육비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※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

- 1인당 지원액 : 예산편성액 범위에서 확정가능하며, 30만원으로 가정함

- 추계방법 :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액 ×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수 × 12월

- 연도별 운수종사자수

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150명	170명	180명	190명	200명

다) 처우개선비 등 환수 규정 신설(안 제8조 신설)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, 금천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금천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다음으로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

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을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이 동일한 목적에서 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(대법원 1997.4.25.선고 96추244 판결 참조)의 판례이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주민 복지를 위한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자 그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을 받고자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요청을 하였으며, 법제처의 답변 결과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받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